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 - 46호

□ 지역혁신형(1유형)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시업 지수 있다. 지수 시업 지수 기업 지수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 등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주 산업단지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O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업 성장성을 인식하고 정규직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 O 제주 산업단지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우 수인재 발굴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 개 요

- O 사 업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O 세부사업: 제주 산업단지 청년인재 육성사업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재)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용암해수일반 산업단지, 서귀포대정농공단지, 제주구좌농공단지, 제주금능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ICT/BT분야 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접수기간: 2022. 3. 14.(월) ~ 2022. 3. 24.(목) 18:00

- O 사업기간: 약정일로 부터 2년 범위 내
 - * 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15명 내외(기업 당 상시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평가 후 지원) (상시근로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인원 산출시 소숫점이하 절상) ※ 서류 적격 여부 확인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원여부 결정
- O 지원내용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 월 보수 : 2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180만원, 기업 자부담 20만원이상)
 - ※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행정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채용자에 대한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의무참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다만,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 기 선정된 '22년 신규유형 사업이 있을 경우, 다른 유형 사업 선정에 자동제외

□ 추진체계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창출을 통한 청년 인재 지역 정착 지원

□ 추진전략 및 프로세스

① 참여기업 신청

·참여기업 희망 기업 JEIS를 통한 참가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② 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③ 참여기업 및 청년 매칭

·참여기업-청년 매칭 ※워크넷 구직 등록 청년 매칭 必

기업-청년 매칭

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청년들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역정착형 일자리 창출

④ 일자리 및 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청년들의 현장 능력 배양을 위한 인건비 지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공통 교육

> 일자리 지원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

2 신청자격 및 기준(기업)

□ 신청자격 및 기준: 아래의 각호에 모두 충족 되는 기업

- 1.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서귀포대정농공단지, 제주구과농공단지, 제주금능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ICT/BT분야 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2. 청년 근로자에게 연기준 24,000천원 이상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
 - ※ 급여 지급내역 확인 후 충족 시 지원하며,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 취소
- 3. 참여 일자리 분야
- O (ICT 산업) ICT 산업 특성상 ICT 개발자 중심의 인력 채용
- 가. 지능형 기술기반 관광서비스 및 지역 주력산업과 융합 관련 상품개발 업무 나. 지역 바이오산업과 접목 가능한 디지털전환 업무

- 다. 디지털 기술이 지역산업(관광·1차산업 등)에 융합되어 제품, 서비스의 혁신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
- O (BT 산업) R&D 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연구개발이 가능한 석·박사 중심의 전문인력,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는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력 및 마케팅 관 련 인력 채용
 - 가.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
 - 나.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지역 화장품, 식품 등 상품 개발 업무

□ 지원제외 대상

-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원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 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선정 후 취소 가능)
 - 가.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나.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시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시업장 포함 다.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4대보험 적용제외 비영리단체·법인은 미가입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예) 국민·건강·건강 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참여
 - 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완납증명서'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라.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기업
- 마.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 바. 정부·지방자치단체, 제주테크노파크 사업의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사. 신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아.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 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제외)
 -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지원자격 및 기준

- O 연령기준: 만 18 ~ 39세(1982. 1. 1 ~ 2004. 12. 31 출생자) 청년
- O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워크넷 구직신청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휴·폐업자(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증명서 제출)를 우선 선발
- O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근무지 및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 만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자, 현재 취업상태인 자(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단, 일용근로자 제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O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단, 결혼이민자 제외)
- O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 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자
- O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 O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

만 참여자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O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O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지원 내용

□ 직접 인건비 지원

- O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4대 보험은 기업부담)
 - : 약정일로 부터 2년 범위 내
 - * 지원기간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O 지원금액 : 직원 신규 채용 시 연봉 2,400만원 기준 90%(월 1,800천원) 지원
 - * 연봉 24,000천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1,800천원으로 동일
- O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취업자인 경우 교통비월 10만원, 동일 읍·면지역에서 출근, 제주시 동 지역에서 서귀포시 동 지역 출근 월 5만원 추가지원 가능
- O 인건비 지원 형태: 기업에서 선지급 후 지급내역 확인 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참여기간 중 2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 컨설팅 지원
 - * 참여기업 업종,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
 - * 관리기관(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무 참여 (미참여시 협약해지)

- 5
-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인·구직자에 한함
- O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원칙
- O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 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여기업 부담)
- O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 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제주테크노파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6 평가방법 및 추진절차

□ 선정 및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기업-청년 매칭	적격여부 조회 및 통보	채용 및 협약
기업 → 제주TP	제주TP → 기업	기업 - 청년	제주TP → 기업/청년	기업 – 제주TP – 청년
• 사 업 신 청 서 (기업용), 관련 서류 등 접수	●제출서류 검토 ●현장확인 (제출서류 미미 또는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참여기업 선정 (서면 평가)	●기업-청년 매칭 ● 사업 신청 서 및 서류 제출 (청년용) ●전체 지원 규모의 100% 선착순 지원	• 사 업 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협약 및 지원

- ※ 기업 및 청년 구직자 신청 전 채용된 청년에 경우 지원 및 소급 적용 불가
- ※ 워크넷(www.work.go.kr) 구직 신청 청년만 참여 가능

□ 선정방법 및 항목

- O 제출서류 사전 검토
 - 신청자격 부합성, 지원제외 대상 등 제출서류 검토
- O 평가방법: 서류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사업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

-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

O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내용		착안사항	
기업비전 및 지원 인프라(30)	기업 비전	기업의 비전과 본 사업 목적과 부합정도	10
	지원 인프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10
	기업 활동 현황/계획	해당 기업이 지역내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진행한 활동현황/계획	10
인력활용 및 지원 계획 (50)	인력활용 계획	해당 청년이 회사내의 업무 역할 및 비중	30
	지원 계획	청년들의 역량들을 배양하기 위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무 등	20
근로조건 등 복지혜택 (20)	근로조건	급여, 제수당,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10
	복지혜택	청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복지 혜택	10
합계			100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O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O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 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 O 참여근로자 타(지역) 사업장 근무

[부정수급 처분]

- O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O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 조치 등

기 타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2 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9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신청기업정보 포함)	1부	붙임 1	필수
①-1, 참가기업(단체) 소개서 * 협회 등 단체에 해당	1부	붙임 2	필수 (해당시)
①-2 참여 기업 확인서	1부	붙임 3	필수
①-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필수
③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사본)	1부		필수
④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mark>유효기간 확인 必</mark>)	각 1부		필수
⑤ 4대 보험 완납증명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mark>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mark>)	각 1부		필수
⑥ 기업 소개 자료(필요시)	1부	필요시	

^{*} ② , ③ 번 서류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기업은 제출 불필요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u>2022. 3. 14.(월) ~ 2022. 3. 24.(목) 18:00</u>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u>방문 및 e-mail 접수 불가</u>)
 - 양식교부 :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홈페이지(jeis.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O 접 수 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or.kr)에서 신청
 - *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 후 신청서 업로드
 -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단) 전산오류, 파일용량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오프라인 접수 가능
 - ※ 오프라인 접수인 경우 관리기관(TP)의 전산상의 오류일 경우에만 인정
 - ※ 기업 사전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접수 불가

□ 사업관련 문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재)제주테크노파크		방다현 연구원	Tel. 064)720-3068
	지역산업육성실	업육성실 양승현 연구원 Tel. 064)72	Tel. 064)720-2873
		최고다 책임연구원	Tel. 064)720-2312

□ 제주산업정보서비스 관련 문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경태 연구원	Tel. 064)720-3077